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생태산업단지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기업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제2항, 제11조)
- 나. 법 개정으로 “녹색경영컨설팅”이 “청정컨설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제목 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항제4호, 제6조)
- 다. 법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안 제5조)
- 라. 지방자치단체도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

기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9조)

마. 법률(제13747호, 2016.1.6. 및 제18506호, 2021.10.19.) 및 시행령(제28408호, 2017. 10. 31) 개정으로 인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3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 삭제)

바.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 기관의 범위에 포함된 기관 중 기관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20조제4호 및 제5호)

사. 법률 개정으로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안 제21조)

아. 법률 개정으로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생태산업개발 촉진”으로 변경되고 그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조문의 제목 등을 변경 및 정비(안 제22조)

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차.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규정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지 제5호서식 신설)

카.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환경경제효율성”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제”를 “국내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청정생산건설탕산업”을 “청정건설탕산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녹색제품의 생산 촉진 지원기관 등)”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에 관한 사항

제9조 중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원과 지속가능경영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1조 제5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확산

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제21조제10호(종전의 제5호) 중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을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생태산업단지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를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0조의2제2항”으로, “영 제11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을 “영 제11조의3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을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

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한 평가기관 지정서”란 별지 서식과 같다.

제23조의3(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②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4호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호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재제조제품”을 “재제조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는 그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하려는 제품 및 제품 포장재에 “재제조 제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하려는 제품·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 “재제조 제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호 중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및 제4호 중 “재제조제품”을 각각 “재제조 제품”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제조 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시된 재제조 제품의 표시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다목 및 라목에 따른 처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제8항 제1호	지정 취소		
나. 영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법 제22조제8항 제2호	개선 명령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2조제8항 제3호	개선 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라. 제23조의3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2조제8항 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 기관명 :
- 소재지 :
- 대표자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 기관(법인)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생략)</p> <p>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p> <p>1. 산업별 <u>환경경제효율성</u>의 실태에 대한 사항</p> <p>2. <u>국제</u>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p> <p>3. (생략)</p> <p>4. 재제조산업, 녹색경영과 <u>청정</u> 생산컨설팅산업, 제품서비스 화산업에 대한 사항</p> <p>5. ~ 7.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u>녹색제품의 생산 촉진 지원</u> 기관 등) ① (생략)</p> <p>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u>녹색제품의 판매</u> 촉진을 위한 <u>유통시스템의 구축</u>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p>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환경경제효율성, 자원</u> <u>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u> <u>등</u>-----</p> <p>2. <u>국내외</u> ----- ----- --</p> <p>3. (현행과 같음)</p> <p>4. ----- <u>청정</u> <u>컨설팅산업</u>-----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u>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u> <u>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u>)</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다음 각 호</u>----- ----- -----.</p>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저탄소·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에 관한 사항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 -----

----- 다
음 각 호에 따른 기관-----
-----.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

-----.

1. ~ 4. (생략)

<신설>

제14조(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인정업무수행계획서(영 제17조의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력현황과 조직체계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

1. ~ 4. (현행과 같음)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① <삭제>

다.

제15조(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와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경영체제 국내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내인정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와 지정번호
4. 인정업무의 범위

제16조(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

① <삭 제>

① <삭 제>

관의 보고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실적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업무 규정의 변경사항

②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내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실적

2.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업무규정의 변경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에 그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인증기관의 자료제출) 법

① <삭 제>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16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8항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수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15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경영체제 신뢰성사업 등)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녹색경영체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홍보
3. 국내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대외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제19조(인증기관 관리대행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의3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관

① <삭 제>

① <삭 제>

리대행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체제 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정 기관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내인정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녹색경영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제8항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증수행 현황을 종합하여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체제인증 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 4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정원과 지속가능경영원

제21조(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

-----.

1. ~ 3. (현행과 같음)
- ① <삭제>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

-----.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그 밖에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2조(생태산업단지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영 제11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

1. ~ 4. (현행과 같음)

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확산

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0.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
----- 법 제20조의2제2항-----

----- 영 제11조의3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
-----.

② ----- 법 제2

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0조의2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③ -----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

-----.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태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생태산업단지에 추진될 주요 생태산업개발 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

<신 설>

제23조(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의 대행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삭 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

3. 「산업발전법」 제38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

<신 설>

<신 설>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한 평가기관 지정서”란 별지 서식과 같다.

제23조의3(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8

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고
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
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
우

②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지
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8조의2제4호에 따라 평가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호
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
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제24조(재제조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①·② (생략)
<신설>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는 그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하려는 제품 및 제품 포장재에 “재제조 제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하려는 제품·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 “재제조 제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략)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자동차부품연구원

3. (생략)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2. (생략)
3.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의 효과 분석
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의 작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제2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및 시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

-----.

1. (현행과 같음)
2. -----

----- 한국자동차연구원
원

3. (현행과 같음)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

-----.

- 1.·2. (현행과 같음)
3. 재제조 제품 -----
--
4. 재제조 제품 -----

① <삭제>

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